

의안 번호	357
----------	-----

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1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357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07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-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,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5년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

- 재위탁 대상 :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

연번	시설명 (원장)	소재지 (행정동)	현 위탁체 (대표자)	정원/현원	현 위탁기간
1	다솔어린이집 (남수연)	삼양로2길55 (길음제2동)	사회복지법인인덕원삼 천사복지재단(강순옥)	57/42	2020.06.01.~ 2025.05.31.
2	길음빛어린이집 (양희선)	길음로92 (길음제1동)	개 인 (양희선)	72/64	
3	아이누리어린이집 (김영실)	송인로16 (길음제2동)	개 인 (김영실)	20/20	2020.07.01.~ 2025.06.30.
4	꿈빛어린이집 (정혜연)	종암로21길127 (종암동)	개 인 (정혜연)	19/19	2020.09.01.~ 2025.08.31.
5	대림어린이집 (최은정)	길음로118 (길음제1동)	길음뉴타운대림아파트입 주자대표회의(강철)	28/28	
6	즐거운어린이집 (문은순)	정릉로305 (정릉제1동)	개 인 (문은순)	20/20	
7	한사랑어린이집 (박선자)	솔샘로25길28 (정릉제4동)	개 인 (박선자)	20/20	

- 위탁기간 :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(예정)
- 수탁기관 선정 : 2025년 제1차,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 선정

나. 위탁사업의 범위

-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□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'국공립 어린이집'의 관리·운영에 대한 사무를 재위탁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'민간위탁 조례')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위탁용어의 정의

- **신규위탁** :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**재 위 탁** :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※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(보건복지부)19p

□ 주요내용

- 재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7개소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5. 5.31~8.31자로 만료되기에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

□ 민간위탁의 적정성

-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1)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(이하 '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') 제13조제1항2)에서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고 명시하고 있고,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3조(위탁운영)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7항3) 및 「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14조제1항4)에서는 ‘구청장은 기존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위탁 기간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2 별표 8의25), 「보육 조례」 제14조제1항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「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 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3)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 ⑦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

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5)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[별표 8의2]

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(제24조의2 관련)

다.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